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공공기관 명</td><td colspan="6">경상북도 예천군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관</td><td>㈜씨에이에스</td><td>평가
기간</td><td>2026.07.27
~
2026.08.31</td><td>평가
예산</td><td colspan="2">☐ 1천만원 미만
☐ 1천만원 이상 ~ 3천만원 미만
☐ 3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
☐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
☑ 1억원 이상</td></tr>
<tr><td rowspan="7">평가대상시스템 개요</td><td>시스템명</td><td colspan="3">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</td><td colspan="2">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</td><td>2026. 1. ~
2026. 12</td></tr>
<tr><td>추진개요 및 목적</td><td colspan="6">•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부과.징수.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
• 지방세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
•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추진성격</td><td>대상여부</td><td colspan="2">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·고유식별정보 처리
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50만 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연계 처리
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3호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처리</td><td rowspan="2">추진예산</td><td rowspan="2">102,650,562천원
(VAT 별도)</td></tr>
<tr><td>추진주체</td><td colspan="2">행정안전부</td></tr>
<tr><td>추진근거</td><td>지방세기본법 제135조(지방세업무의 정보화)</td><td>추진유형</td><td>☐ 신규 구축
☐ 변경(고도화)
☑ 운영</td></tr>
<tr><td>신기술 유형</td><td colspan="3">-</td></tr>
<tr><td>주요내용</td><td colspan="6">• 지방세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
• 지방세 관련 법·제도 개정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
•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</td></tr>
<tr><td>운용체계 변경내용</td><td colspan="6">해당하지 않음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개인정보파일 개요</td><td>파일명</td><td>정보주체 수</td><td colspan="2">개인정보 항목</td><td>제3자 제공</td><td>개인정보 처리 목적</td></tr>
<tr><td>(지방세) 담배소비세관리</td><td>883 건</td><td colspan="2">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</td><td>법령 근거 제공</td><td>담배소비세 부과 관리</td></tr>
<tr><td>(지방세)등록면허세 관리</td><td>117,950 건</td><td colspan="2">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기타(물건지, 면허명, 면허종, 은행명, 계좌번호, 전자납부번호, 허가번호)</td><td>법령 근거 제공</td><td>등록면허세 과세자료 관리</td></tr>
</tabl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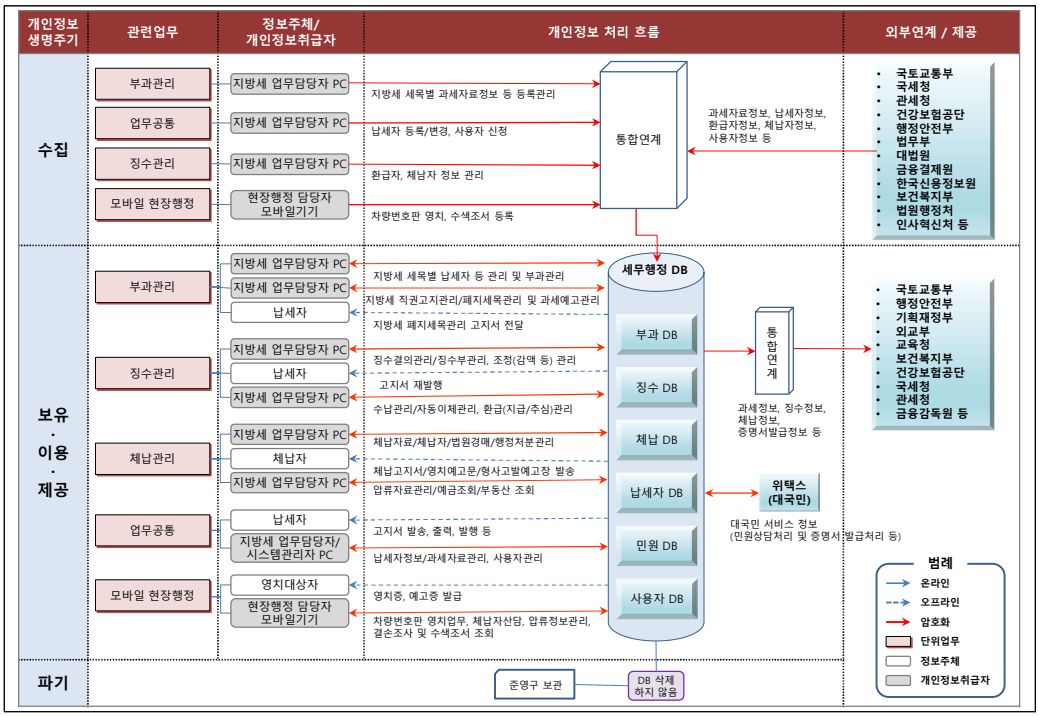
	(지방세)자동차세관리	49,532 건	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E-Mail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기타(차량번호, 은행명, 계좌번호, 전자납부번호, 장애정보)	법령 근거 제공	자동차세 과세자료 관리
	(지방세)재산세관리	149,006 건	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기타(전자납부번호, 물건지)	법령 근거 제공	재산세 과세자료 관리
	(지방세)주민세관리	67,097 건	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법령 근거 제공	주민세 과세자료 관리
	(지방세)지방소득세관리	21,063 건	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기타(전자납부번호, 은행명, 계좌번호)	법령 근거 제공	지방소득세 과세자료 관리
	(지방세)지역자원시설세관리	16 건	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기타(물건지)	법령 근거 제공	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자료 관리
	(지방세)취득세관리	86,436 건	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기타(전자납부번호)	법령 근거 제공	취득세 부과 관리
	(지방세)수납관리	166,718 건	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직장연락처, 직장주소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기타(은행명, 계좌번호, 신용카드번호, 과세정보)	법령 근거 제공	지방세 수납관리
	(지방세)감액관리	30,526 건	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기타(사업자명, 은행명, 계좌번호, 과세정보)	법령 근거 제공	지방세 감액 및 수정 관리
	(지방세) 환급관리	39,825 건	이름, 집주소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기타(환급금액, 은행명, 계좌번호)	법령 근거 제공	지방세 환급관리
	(지방세) 체납관리	5,823 건	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기타(직업)	법령 근거 제공	지방세 체납관리
	(지방세) 징수유예관리	3,681 건	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기타(과세금액, 과세정보)	법령 근거 제공	징수유예관리
	(지방세) 압류관리	18,543 건	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기타(	법령 근거 제공	지방세 체납처분 관리

			과세금액, 과세정보)		
	(지방세) 정리보류 관리	5,129 건	이름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기타(자산정보, 납세정보, 행정처분정보, 신용정보)	법령 근거 제공	지방세 정리보류 관리
	(지방세) 납세자관리	169,095 건	이름, 생년월일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기타(과세정보)	법령 근거 제공	지방세 납세자정보 관리
	(지방세) 행정제재 관리	1,383 건	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기타(체납정보)	법령 근거 제공	행정제재 관리
	(지방세) 세무조사 관리	105 건	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법령 근거 제공	세무조사법인 및 개인이력관리

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

1. 개인정보 처리 흐름
 - 차세대 표준지방세시스템은 국토교통부, 국세청, 관세청, 국민건강보험공단,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, 납세자정보, 환급자정보, 체납자정보,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.
 - 순창군 지방세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/징수/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
 - 차세대 표준지방세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준영구이므로 DB에서 준영구 기간동안 보관함

2.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



영향평가기준	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	-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"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(제2025-7호, 2025.9.5.,일부개정) 제10조(평가영역 및 평가분야), 제11조(평가항목)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 -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,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('22.3)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. -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(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)
	주요 평가기준	-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"개인정보 보호법령"을 반영 -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"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"을 반영 -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(2025년 10월 개정) 준용 -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
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·평가		**1.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** -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『지방세법』제49조, 제130조,『지방세기본법』제135조,『지방세기본법』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,『개인정보보호법』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**2. 개인정보 처리,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** - 차세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기본법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(준영구)으로 안내하고, 기관에서 해당 기간으로 산정 및 기관장의 승인을 득함 -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으나,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회신 공문에서 안전성 조치 요청을 하지 않음 - 재해·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을 미수립함
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	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	-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안전한 조치 요청하는 공문 작성 계획 - 재해·재난 대비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을 기초로 중앙 인프라에 적합한 복구 계획 수립 계획
	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	해당없음
평가결과		•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1장)는 10개 항목 중 이행 9건, 부분이행 0건, 미이행 0건, 해당없음 1건으로 평가함. •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2장)는 7개 평가항목 중 이행 6건, 부분이행 0건, 미이행 0건, 해당없음 1건으로 평가함. •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(3장)는 17개 항목 중 이행 14건, 부분이행 1건, 미이행 0건, 해당없음 2건으로 평가함 •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는 27개 평가항목 중 이행 21건, 부분이행 0

	건, 미이행 2건, 해당없음 4건으로 평가함. •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 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.